

2000. 12. 23
제10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재 영)

200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개 요

1. 세입·세출총괄규모(일반회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제2회 추경예산) 대비 0.27%인 1억 2,214만 3천원이 증가된 446억 1,998만 7천원이고,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5%인 4억 9,890만 8천원이 감액된 317억 1,963만 9천원임.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률
세 입	44,619,987	44,497,844	122,143	0.27
세 출	31,719,639	32,218,547	△498,908	△1.55

2. 세입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에서 1,554만 5천원(수수료수입 1,354만 7천원, 잡수입 199만 8천원), 지방교부세에서 1억원, 보조금에서 659만 8천원이 증액되었음.

3. 세출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증감내역은 예비비등에서 7억 7,752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예산에서 2백만원, 사업예산에서 2억 7,661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체적인 증감내역과 부서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세항별·부서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기획감사실	주민자치과	사회진흥과	보건소	동
합 계	△498,908	△806,225	38	300,000	6,579	700
경 상 예 산	2,000	1,300				700
인건비						
경상직 경비	2,000	1,300				700
사 업 예 산	276,617	△30,000	38	300,000	6,579	
보조사업	206,617		38	200,000	6,579	
자체사업	70,000	△30,000		100,000		
예 비 비 등	△777,525	△777,525				
예비비	△927,525	△927,525				
기타	150,000	150,000				

II. 검토의견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그리고 추가·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일부 증감된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등 실업대책비와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진료비 그리고 추가로 발생한 필수경상비 및 당면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2000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0.27%인 1억 2,214만 3천원(당초예산액 대비 25.42%인 90억 4,405만 3천원)이 증액된 446억 1,998만 7천원, 세출은 2000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55%인 4억 9,890만 8천원이 감액된(당초예산액 대비 18.95%인 50억 5,375만 3천원이 증액된) 317억 1,96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률
세 입	44,619,987	44,497,844	122,143	0.27
세 출	31,719,639	32,218,547	△498,908	△1.55

200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규모추이

(단위 : 천원, %)

구분	제3회 추경	제2회 추경	제1회 추경	당초예산	기정예산액 대비		당초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세입	44,619,987	44,497,844	41,202,818	35,575,934	122,143	0.27	9,044,053	25.42
세출	31,719,639	32,218,547	29,570,019	26,665,886	△498,908	△1.55	5,053,753	18.95

자세한 것은 집행부 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 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도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총 1건에 2억원입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예산심의시 삭감된 사업비를 다음 추경 때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예산성립 이전에 이미 그 필요성이 생긴 경비, 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등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추경요건에 반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의회가 불요불급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예산에서 삭감한 경비를 추경에서 다시 계상하는 것은 예산성립후의 여건변동에 의한 경우 외에는 동일사항에 대한 의사의 이중결정의 모순과 함께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예산 심의의 적정성을 흐리고 하고, 의회의 심의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에 입각한 증감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의견을 분명히 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심의확정권과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예산성립 후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는 한 일단 의회가 삭감한 경비는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표 1>부활예산의 내역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사업내역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추가편성안
		편성안	예산액	추가편성안	추가액	
사회진흥과	서창(벽진5통)마을회관건립	400,000	400,000	200,000	0	200,000

명시이월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명시이월 사업은 3건으로서 이월사유는 등록심사 미완료, 사용허가 미획득 그리고 소요사업비 확보지연 및 결산추경확보 등을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자치과의 휴대폰 차단기설치사업과 사회진흥과의 인공암벽등반시설 사업의 경우, 이월사유에 비추어보아 이들 사업이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시점에서 충분히 명시이월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예측 가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성립전 사용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예산의 성

립전 사용은 재정의회주의에 대한 예외이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의 성립전 사용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구분	2000 연도예산	2001년 명시이월	이월사유
정보홍보실	• 상표권 등록 수수료	추가	2,500	2,500	등록심사 미완료
주민자치과	• 휴대폰 차단기 설치	추가	2,400	2,400	사용허가 미획득
사회진흥과	• 인공암벽등반시설	변경	(기정)300,000 (수정)400,000	300,000 400,000	소요사업비 확보지연 및 결산추경 확보

사업예산의 전액 감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서구 문화예술진흥 및 발굴 연구용역비(학술용역비)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건은 2000년도 본예산 편성시 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본 위원회 심의시 500만원이 삭감되어 소명절차를 거쳐 3000만원으로 심의·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한 것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그 동안 가용재원이 사장되어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지 못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해왔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간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 보며, 앞으로 예산편성시 투자사업간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예산액	내 용
기획감사실	• 서구 문화예술진흥 및 발굴 연구용역	30,000	전액감(사업계획취소)